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7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도 본청 및 관계기관(농협)의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명칭과 위원회의 위원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

주요골자

- 농촌소득개발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중 '농어촌개발국장'을 '농정국장'으로, '농림수산국장'은 삭제하고 '농협 도지회장'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'충북지역본부장'으로 '충북원예협동조합장'을 '충북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'으로 명칭 변경 (안 제 5조 1항 2호)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'농어촌개발과장' 을 간사로 한다를 '농업정책 과장'으로 명칭 변경 (안 제 5조 1항 4호)

개정근거

- 충청북도직제규칙중 개정규칙 2021 호 (1994. 5. 16)
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개정 (1995. 2. 1)

기타 참고자료

- 별첨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제1항 제2호중 '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' 을 '농정국장'으로 '농협도지회장'을
'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'으로 '충북원예협동조합장'을 '충북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'
으로 하며 제4호중 '농어촌개발과장'을 '농업정책과장'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구성) ①생략 1. 생략 2. ----- <u>농어촌개발국장, 농림수산국장</u> ----- 농협도지회장, ----- 충북원예협동조합장 ----- 3. 생략 4. 위원회의 ----- 농어촌개발과장-----. ② 생략	제5조 (구성) ①현행과 같음 1. 현행과 같음 2. ----- <u>농정국장,</u> ----- <u>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,</u> ----- <u>충북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</u> ----- 3. 현행과 같음 4. ----- 농업정책과장----- ② 현행과 같음

참 고 자 료

지방 자치법 (부분발췌)

제 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 16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